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6

나. 제 안 자 : 이명숙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 2009. 11. 6

라. 상정일자 : 2009. 12. 18(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이명숙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립예술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마련하여 인천시립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술감독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예술단원 위촉 시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두도록 함.(신설)

○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함.(안 제8조제2항)

○ 위촉연령 연장은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1조제1항)

○ 단원의 해촉요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2조제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입안 취지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 및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임.

□ 주요 내용

○ 예술감독의 직무(안 제3조 제2항)

- 안 제3조 제2항에서 예술단별 예술감독의 직무에 대하여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을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음.

○ 소위원회 및 전형위원 기능 조정(안 제5조 ~ 제6조)

- 안 제5조 제1항에서 각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단원의 신규채용 및 평정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각 예술단별로 전형시기마다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단원 채용시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현재 예술단원의 신규채용 및 정기평정은 현행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는 공연

계획이나 신규 채용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채용 및 평정 심사를 현행 조례의 소위원회와 전형위원의 기능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제5조 제1항에서 소위원회 기능 중 신규채용 및 평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이를 전형위원이 심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 **단무장의 봉급 및 위촉기간(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사무단원 중 단무장은 연봉적용 대상자로 하고,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하였음.

  단무장에 대한 연봉제의 적용은 단무장이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국내·외 공연에 따른 마케팅 및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중요한 역할에 맞는 대우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으로 인해 일반 단원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됨.

<인천시립예술단 연봉 적용대상 및 연봉>

대 상	연 봉 액
교향악단 예술감독, 교향악단 부지휘자, 교향악단 악장 합창단 예술감독, 합창단 부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무용단 예술감독, 무용단 부안무자 극단 예술감독, 극단 부연출자 국악단 예술감독, 국악단 부지휘자, 국악단 악장	별도계약에 의함

※ 근 거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제5조 별표 4의2)

-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예술감독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현재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10조 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예술감독의 위촉기간 만료 후 신임 예술감독의 위

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과의 이견 및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

- 한편 단무장의 임무는 예술감독과는 엄연히 분야가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그러나 예술감독과 함께 전체 예술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감독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감독과 같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으나, 유능한 단무장인 경우에도 예술감독이 해촉되었을 경우, 대부분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험 많은 유능한 인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예술감독은 3년, 단원의 위촉기간 규정은 삭제하였음.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한 것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단 운영의 일관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임.

- 단원의 위촉기간 규정 삭제는 현행 조례상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재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10조 2항에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이 재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원의 위촉기간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촉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임

  한편,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 단원의 위촉기간도 2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단원의 해촉(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예술감독을 포함한 단원의 해촉요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전형위원을 규정한 6조의 신설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정종섭, 최병덕 위원

- 시립예술단원의 인천지역 거주 비율은?
- 인천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은?

< 답 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단원의 약 30%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음
- 시립예술단원은 공개모집 및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능력과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지역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인천지역 신청자에게 가점을 줄 수도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정종섭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자격과 위촉) ① (생략)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과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제8조(자격과 위촉)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비상임 단원과 사무단원은 분야별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은 연봉 적용 대상자로 하며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제8조(자격과 위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 ---------- ---.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객원 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규채용, 평정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위촉하되, 단원인사상의 문제 등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자는 당해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 정기평정, 단원인사상의 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비상임단원과 사무단원은 분야별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전형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생략)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을 지휘하고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예술단의 연간 주요공연계획 및 공연평가에 관한 사항과 신규채용, 평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예술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단원인사상의 문제 등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자는 당해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제5조(소위원회) ① ---------- ---------- --- <삭제>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및 정기평정, 단원인사상의 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생략)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자격과 위촉) ① (생략)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과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분야별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제8조(자격과 위촉)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② 단원은 해당하는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관장이 위촉하며 비상임 단원과 사무단원은 분야별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무단원 중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예술감독과 같이 한다.
제8조(전형의 방법) (생략)	제9조(전형의 방법)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위촉연령) ① (생략)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0조(위촉연령) ① (현행 제9조와 같음) ② ----------전형위원----------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 (생략) 1. ~ 7. (생략) <신설> 8. (생략)	제12조(해촉) (현행 제11조와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9. (현행 제8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생략)	제13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예산 및 수입금) (생략)	제14조(예산 및 수입금)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실비보상) (생략)	제15조(실비보상)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입장료 징수) (생략)	제16조(입장료 징수)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탁관리) (생략)	제17조(위탁관리)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규칙) (생략)	제18조(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